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작가 __ (이하 '작가')와 모델 __ (이하 '모델')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모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작가와 미술작품의 모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필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와 모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작업의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품 내지 프로젝트명 : _____
2. 작업 일정 : 20○○. ○○. ○○. ~ 20○○. ○○. ○○.
3. 작업 기간 및 횟수 : 1개월당 ○회
4. 작업 시간 : 1일당 ○시간
5. 구체적인 작업 장소 및 환경
 - 가. 작업 장소 : _____
 - 나. 작업 환경(실내/야외 여부, 모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 _____
6. 노출 포함 여부 및 수위
 - 가. 노출 없음
 - 나. 노출 있음
 - 1) 수영복, 속옷 또는 그에 준하는 노출을 요하는 특수의상 착용
 - 2) 상체 일부 노출 (예상 노출 정도 : ○%)
 - 3) 하체 일부 노출 (예상 노출 정도 : ○%)
 - 4) 전신 노출
7. 작품 내용 중 성적 뉘앙스 내지 함의(sexual nuance or implications)를 포함하는 표현이 있음
8. 의상 및 소품 제공
 - 가. 전부 제공
 - 나. 일부 제공
 - 다. 제공하지 않음
9. 탈의실 및 대기실 제공
 - 가. 탈의실 제공
 - 나. 대기실 제공
 - 다. 제공하지 않음
10. 작가 외 제3자의 작업 참가
 - 가. 참가하지 않음
 - 나. 참가함 (예상 인원수 : ○명)

제2조는 모델 작업이 어떠한 일정과 장소 및 환경에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지금까지 모델의 작업 환경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점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작업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제6호 이하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사례 1 : 스포츠Q-미성년자에게 “다리 벌려라” 요구한 비공개 촬영회 실장.. 유출 압박까지】

18살 미성년자인 모델 지망생 A는 비공개 촬영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면접을 보기 위해 신촌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더니 빨간 조명에 이상한 속옷들이 잔뜩 있었다. 이어 바로 촬영이 진행되었는데 스튜디오 실장이 갑자기 문을 잠그고 다리를 벌리라고 요구했다. A는 두려움에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촬영 후에도 사진 유출이 우려해 항의할 수도 없었다.

【사례 2】

“촬영을 하다보면 노출의 수위가 심해지거나 사전에 협의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하는 사항들마저도 모두 구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이다보니 이에 대하여 나중에 항의하기도 어려웠다.”

필수 제3조(작업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기간) ① 작가는 모델과 협의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작품 내지 프로젝트의 작품집 및 관련 포스터, 스틸 사진,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2.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등
3. 인터넷 및 SNS 등의 매체
 - 게시 대상 웹사이트 URL 주소 : <https://>
 - 게시 대상 SNS 매체 :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기타 _____(구체적으로 기재)

② 작가는 본 계약에 따른 작업 이후 ○년 동안 작업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다. 작가는 위 기간이 경과하면 작업 결과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외적으로 작업 결과물이 노출 내지 공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전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이용 범위 및 대가에 관하여 모델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작가가 이에 위반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은 작가에 대해 즉시 그 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공표된 내용의 삭제·폐기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작가는 모델의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 결과물의 이용 범위, 특히 이용 매체와 기간에 대해 상세히 정해 둘 필요가 있는바, 제2조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작가가 합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모델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만일 작가가 이를 위반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은 작가에 대해 작업 결과물의 이용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제15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작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례 1】

“촬영한 사진이 기존에 합의되지 않은 매체에 게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작가가 모델에게 전시를 위하여 촬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후에 이를 책이나 잡지로 발간하거나, 상품 등에 부착하여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 2】

“작가와 모델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결과물의 사용 기간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년 전에 찍은 사진이 SNS 등을 통하여 게시되고 이를 통하여 작가가 수익 활동을 하기도 한다.”

【사례 3】

“오래 전에 작업한 결과물이 갑자기 SNS에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를 싫어하는 모델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모델도 있는데,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필수 제4조(모델료 지급) ① 작가는 모델에게 작업에 대한 대가로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2. 작업 종료와 동시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계좌주 : _____

③ 본 계약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모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는 모델료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델료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작가와 모델 모두 작업에 대해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델료와 잔금의 비율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들의 협의로 모델료를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제3항은, 작가가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모델의 동의 없이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모델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도, 모델이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작가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모델이 이미 수행한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가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

필수 제5조(작가의 일반적 의무) ① 작가는 모델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작가는 모델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작가 외에 제3자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제3자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작가는 모델을 위한 대기실 및 탈의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기실 및 탈의실이 마련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모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 ④ 작가는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모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작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작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에 모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작가는 작업 시 모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모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 ⑥ 작가는 모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에서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전에 고지된 작업을 완료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가와 모델은 상호 협의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⑧ 작가는 모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계약은 작가와 모델 사이에서만 체결되나,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진 동호회 촬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 작가는 제2항에 따라 작업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2조 각 호에 따른 작업의 내용과 범위 및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3항은 작가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모델을 위한 대기실 및 탈의실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작업 장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기실 및 탈의실이 마련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모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델로 하여금 미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9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작가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모델은 제4항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 곧바로 작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이견을 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작가로부터 모델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델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사례 1】

“촬영 전에 ‘사전에 요구받지 않은 작업은 할 수 없다’고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컨셉 변경 정도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아예 노출 수위 등이 크게 조정되는 경우도 꽤 있다.”

【사례 2】

“작가 한 분으로부터 작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는데 실제 작업은 여러 명의 촬영자와 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촬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3】

“촬영 장소에 갔을 때, 소규모 또는 상업적이지 않은 개인 작업 공간의 경우 그냥 모텔에서 촬영하거나, 야외인데 텔의실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화장실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나, ‘가려줄 테니 갈아 입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 필수** **제6조(모델의 일반적 의무)** ① 모델은 본 계약상 정해진 작업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델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델은 작업에 적합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고지 받은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작가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모델은 작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전에 고지된 작업을 완료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모델과 작가는 상호 협의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⑥ 모델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델은 정해진 작업 일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작업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협의된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작가의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필수** **제7조(모델의 제3자 동행 권리)** ① 모델은 원하는 경우 작업 현장에 제3자와 동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모델과 동행한 제3자는 모델과 함께 모델의 본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작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당사자가 명확히 알고 있더라도, 막상 작업 현장에서 사전에 합의된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 현장 분위기 등의 이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 제3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델과 동행한 제3자는 모델과 함께 모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필수** **제8조(작업 결과의 확인)** ① 모델은 작가에게 작업 현장에서 작업 결과의 확인을 즉시 요청할 수 있고, 작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모델은 작업 결과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사전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그 폐기 내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작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항은, 모델이 작업 현장에서 작업 결과의 확인을 즉시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작가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모델의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모델의 작업은 신체적 활동이라는 점, 누드 작업 등과 같이 모델의 내밀한 영역 내지

인격권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작업 결과에 관한 모델 스스로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은 모델에게 작업 결과에 대해 폐기 내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필수 **제9조(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①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 모델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성명, 초상, 음성 등(이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작가는 작업 결과물에 포함된 모델의 초상 등을 본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 모델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가는 사전에 합의된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작업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모델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역시 그 범위와 기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데, 제1항은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사진 후보정 작업 등 작업 결과물의 통상적이고 부득이한 변경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2항은 모델의 초상 등을 ‘본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형’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만 모델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필수 **제10조(작업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①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작가는 모델에게 지급한 모델료로 모델에 대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이용에 따른 수익 분배를 갈음한다.

모델이 작업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모델료는 모델이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수익 보장의 의미를 갖는 한편, 모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용 대가의 성격도 가진다. 제10조는 모델료가 모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분배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모델료에 작업 결과물로 인한 예상 수익이 반영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제11조(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전2조에 규정된 권리를 비롯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와 같은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필수 **제12조(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① 작가는 작업 결과물을 협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모델의 사생활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작가는 모델의 사전 동의 없이 모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출을 포함한 모델 업무의 경우, 작가는 작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노출을 포함한 작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유출될 경우, 작가는 그로 인한 모델의 피해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 등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작가는 모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것이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3항은, 작가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제3자의 일탈 행위’라고 하더라도, 작업 현장 또는 작업 결과물과 관련한 상황에 있어서는 작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만일 일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작업과 관련하여’ 성범죄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사례】

“작업 현장은 각종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많은데, 모델, 작가, 그 외 많은 스탭들이 있고, 개인의 일탈에 따라 몰카 촬영 등의 우려가 항상 존재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필수** 제12조의2(아동·청소년 모델의 보호)
- ① 작가는 모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 ② 작가는 모델에 대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 ③ 작가는 모델에 대하여 하루 4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의2는 모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으로서,⁴⁶⁾ 작가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모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업계 관행을 고려하여, 비록 선진국의 사례와 같은 엄격한 서류 구비 요청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선정적인 표현을 제한하고 과도한 작업을 금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모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 하였다.

【사례 1 : 박석철-어린이·청소년 연기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 사례】

영국 : 어린이·청소년 모델의 고용자가 공연 개시 21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청소년의 거주지 지방교육당국에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신분과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14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연기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 당국이 허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장의 의견서 제출 요구, 건강검진요구, 어린이·청소년 연기자가 개인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사의 인터뷰를 요구 할 수 있다.

46) 모델이 성년인 경우에는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프랑스 : 모델업무에 어린이·청소년을 고용할 경우도 16세 미만은 사전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가 불가할 경우 아동 고용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전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반적인 신상 정보와 함께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업무 리스트를 첨부해야 한다. 연기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본인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성적과 학교장의 허가가 포함된 서류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허가 심사의 결정은 허가 위원회(Commission des Enfants des Spectacle)에서 실시하는데 이 위원회에는 시장 또는 서기관, 아동재판소 재판장, 교육장, 지역 노동국장, 위생국장, 산업의사, 행정 담당 대리인 등이 참여한다.

【사례 2】

“술이나 화장품의 광고 사진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는 나이 제한 등이 필요하다.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모델에 대한 보호가 별도로 되지 않고 있다.”

필수 제13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사례 1】

“노출 수위가 있는 촬영을 진행할 때 작가가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정해놓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을 것 같다.”

【사례 2】

“모델의 신체를 품평한다든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필수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제3자에게 본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필수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작가가 제5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작가가 합의되지 않은 작업을 요구할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 자체를 소급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다(민법 제550조). 따라서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모델은 수령한 계약금 등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고 작가는 그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폐기하여야 하지만,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모델이 수령한 계약금 등 대가나 해지 시점까지 이루어진 작업 결과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종전에 이루어진 작업 부분까지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원할 수도 있으므로, 제15조는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작가가 제5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모델의 동의 없이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모델은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델이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제4조 제3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당사자는 천재지변⁴⁷⁾ 또는 기타 불가항력⁴⁸⁾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시정 촉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⁴⁹⁾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정 촉구는 ‘내용증명’ 등 서면 형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해둔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의사’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일회적인 의무 위반이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필수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47) 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을 의미한다.

48)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6항에 따라 여전히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와 현재의 상태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에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필수 **제17조(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비밀로 유지한다. 본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작업 이후 및 작업 결과물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된다.

필수 **제18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상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관한 보통재판적 규정⁵⁰⁾을 준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필수 **제19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 **제2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49) 통상적으로는 1~2주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성격상 곧바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50)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